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⑤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9. 20.>](#)
1. 양도할 토지 · 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 · 시설 등을 유지 ·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⑥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⑦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 · 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제1항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 ③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법 제52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⑤ 법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11.]

제42조의3(지정 · 승인 · 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10. 8. 11.]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